

조문별 개정 이유서

1.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절차 규정 (안 제6조)

가. 개정 이유

- 법률 개정사항*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

* 통상변화대응 지원대상을 기존 ‘통상조약 등’에서 ‘통상조약 등이나 외국통상조치’로 확대

나. 개정 내용

-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절차 관련 조항 內 기존 ‘통상조약 등’을 ‘통상조약 등이나 외국통상조치’로 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외국통상조치에 따른 피해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2. 기업 지원 전담기관 업무 위탁 규정 (안 제24조)

가. 개정 이유

- 법률 개정 사항*을 반영하여 기업지원 전담기관(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,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) 대상 위탁사무에 반영

*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(법 제8조) 신설

나. 개정 내용

- 법 제8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판로 개척 지원을 위탁 업무에 추가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업무 위탁을 통해 기업 대상 판로 개척 지원 업무 수행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